진천군의회 공고 제2022 - 30호

제308회 진천군의회(임시회) 집회공고

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8회 진천군의회(임시회)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.

○ 일 시 : 2022년 10월 11일(화) 10:00
○ 장 소 : 진천군의회 본회의장

2022년 9월 29일

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